

데이터 제공결정 통보서

■ 데이터 요청기관

기 관 명		부 서 명	
담 당 자		연 락 처	
요청접수일		문서번호	

■ 결정내용

데이터명			
데이터항목			
제공결정내용	☐ 제 공 ☒ 부분제공 ☐ 제공거부	부분제공 사유	
제공일시 및 방법	제공 일시		
	제공 방법	☒ 정보통신망 (공동활용등록관리시스템 또는 행정정보공동이용센터) ☐ 직 접 방 문 (제공장소 :)	
제공비용	☒ 무료		☐ 유료 (원)
종합의견			

■ 유의사항

「데이터기반행정법」 제15조(제공받은 데이터에 대한 관리)에 따라 다음을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- ① 데이터를 제공받은 공공기관은 데이터를 제공받은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해서는 아니 된다.
- ② 데이터를 제공받은 공공기관은 보유기간의 경과, 데이터 이용 목적의 달성 등으로 데이터가 불필요하게 되었을 때에는 지체 없이 해당 데이터를 파기하여야 하며, 데이터를 파기할 때에는 복구되거나 재생되지 아니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.
- ③ 데이터를 제공받은 공공기관은 제공받은 데이터가 위조·변조·훼손 또는 유출되지 아니하도록 내부 관리계획 수립 등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기술적·관리적 및 물리적 조치를 하여야 한다.

또한, 제공받은 데이터를 활용한 연구성과, 정책서비스 개선 등의 실적을 기관 내외에 공개할 경우 그 내용을 반드시 소방청과 사전에 협의 후 공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20 년 월 일